

사업1**중소기업 혁신바우처 (컨설팅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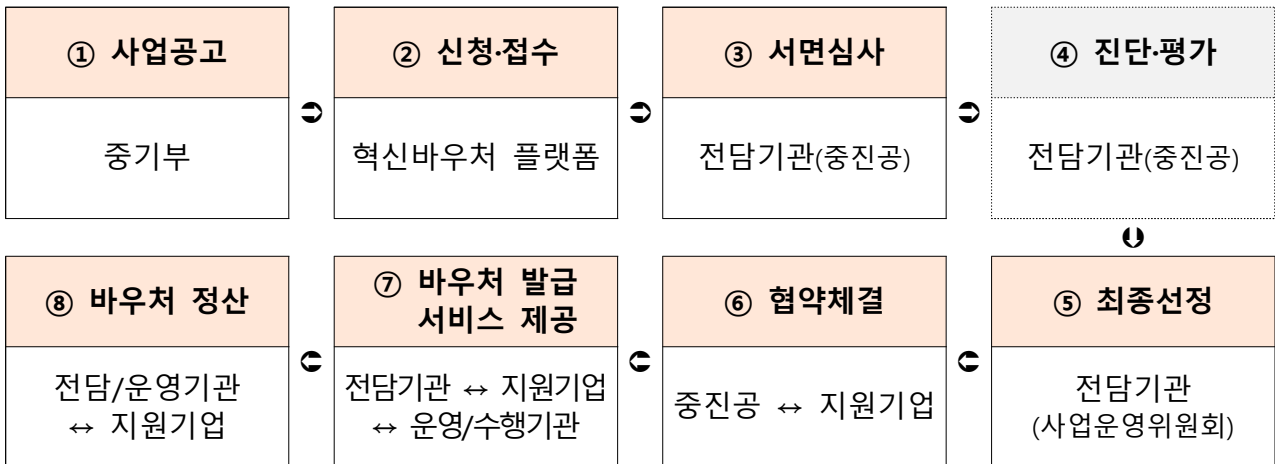
- (사업목적)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* 인천 지역특화 분야 : ①물류로봇 ②자율주행로봇 ③모빌리티 소부장
- (지원규모) '24년 5.44억원 / '25년 4.76억원 / '26년 3.4억원
※지원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*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
- (지원내용)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지원기업(수요기업)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
* 내역별 세부 지원내용 상이

<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

내역명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일반바우처 (지역자율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제조업 영위 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) → <완화>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, 보조율만 차등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 중소기업 기준의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 2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 소기업 기준의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 3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적용 • (지원내용) 제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, 10개 프로그램의 바우처 및 융복합컨설팅 지원 * 신청사항 : 일반바우처는 분야별 1개씩,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• (지원규모) 기업당 최대 50백만원(정부지원 보조율 40~85%) * 3년 평균 매출액 : 3억원 이하(85%), 3~10억원 이하(75%), 10~50억원 이하(65%), 50~120억원 이하(45%), 120억원 이상(40%)

-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중진공), 운영기관*, 수행기관(서비스 제공기관)
* (운영기관) 한국경영지도사회/한국스마트협회(컨설팅), 한국산학연합회(기술지원), 중소기업유통센터(마케팅)

□ (추진절차)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주요 추진절차(기존절차)



- (신청·접수) 중진공 혁신바우처 플랫폼(www.mssmiv.com)
- (서면심사) 신청자격 요건, 지원(제외)대상 여부, 사업추진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
- (진단·평가)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
- (최종선정) 중기부·중진공·외부전문가 구성의 '사업운영위원회'를 통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(참여기업) 선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신청자격 요건 완화 : 참여기업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면 가능
 - * (기준) 제조업 영위 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) → (우대)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)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참여기업이 신청 시 '④진단·평가' 단계의 현장평가 면제

사업2

수출바우처 (수출지원 /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)

- (사업목적) 내수·수출 중소기업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
* 인천 지역특화 분야 : ①물류로봇 ②자율주행로봇 ③모빌리티 소부장
- (지원규모) '24년 2.38억원 / '25년 4.08억원 / '26년 5.78억원
※지원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하고,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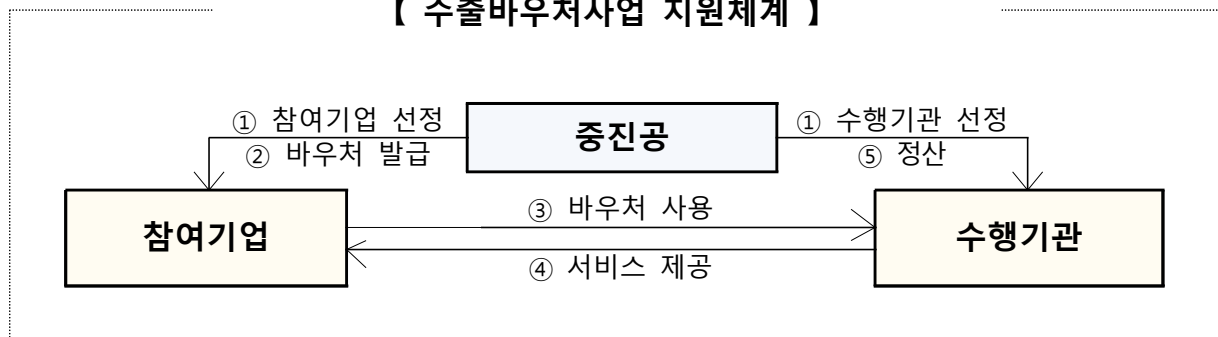
【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】

(단위 : 백만원)

지원트랙	지원 대상	지원한도	국고보조율
내수기업	수출액 '0~1천불 미만'	30	(매출액 기준) 100억원 미만 : 70% 100~300억원 : 60% 300억원 이상 : 50%
수출초보	수출액 '1천~10만불 미만'	30	
수출유망	수출액 '10~100만불 미만'	40	
수출성장	수출액 '100~500만불 미만'	70	
수출강소	수출액 '500만불 이상'	100	

- (지원내용) 디자인 개발, 홍보, 바이어 발굴, 전시회, 인증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식(수출바우처)으로 지원
- 선정기업에 “수출바우처” 발급 →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, 수행 → 소요비용 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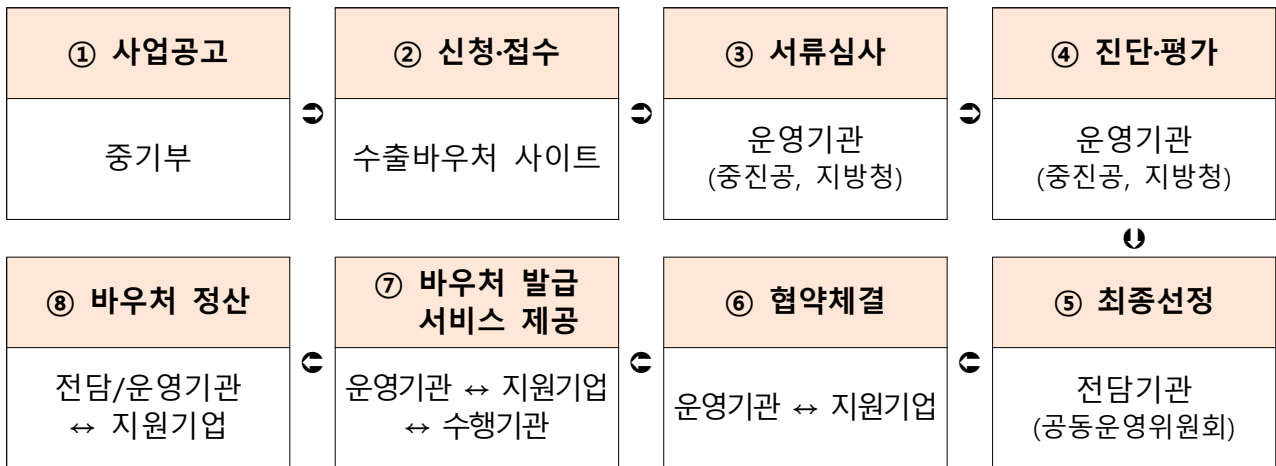
【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체계 】



□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중진공), 운영기관*, 수행기관(서비스 제공기관)

* (운영기관) 중진공, 지방청

□ (추진절차)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



- (신청·접수) 중진공 수출바우처 사이트(www.exportvoucher.com)
- (서류심사) 신청자격 요건, 지원(제외)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 진행 후 현장평가 대상 선정
- (진단·평가) 수출역량(수출성장단계) 및 업종(제조업 및 서비스업)에 따른 현장진단·평가 실시
- (최종선정) 운영기관(중진공·지방청)이 제출한 선정명단을 전담기관(중진공)의 '공동운영위원회'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(참여기업) 선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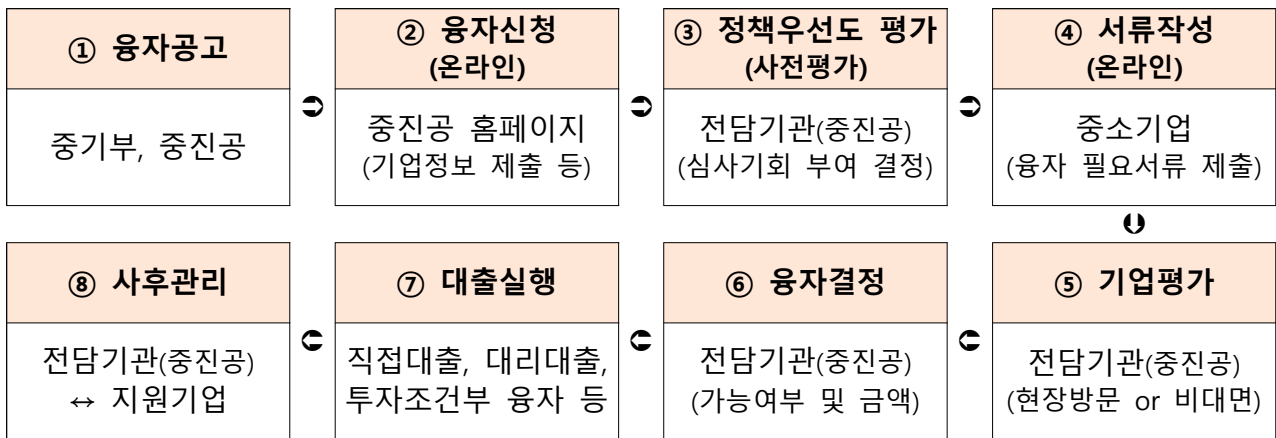
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중 수출바우처 신청기업 간 제한경쟁

*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트랙(내수/초보/유망/성장/강소)을 선택하여 신청하고, 평가를 통해 할당예산(100억원) 한도 내 지원기업 선정

사업3

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 [정책자금]

- (사업목적)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·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 대상 안정적인 자금 공급으로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
* 인천 지역특화 분야 : ①물류로봇 ②자율주행로봇 ③모빌리티 소부장
- (지원규모) '24년 75.6억원 / '25년 75.6억원 / '26년 75.6억원
※지원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*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'24년 융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
- (지원내용) 지원기업에게 혁신창업사업화, 신시장진출지원, 신성장 기반, 재도약지원, 긴급경영안전 등의 자금을 융자 또는 이차보전
*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'24년 융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
-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중진공)
- (추진절차) 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 공통 추진절차



- (신청·접수) 중진공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
*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·지부 선택 후 월별·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및 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, 사업전환자금/구조 개선전용/긴급경영(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) 및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

- **(용자신청)**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희망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전담기관(중진공)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용자신청*
 - * 신용정보 동의, 사전 기업진단, 기업정보 등
- **(정책우선도 평가)** 지역본부·지부별 예산, 신청물량을 고려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
 - *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 분야, 고용창출, 기술·경영혁신, 글로벌화, 정책우대,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(우수기업 및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)
- **(서류작성)**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전담기관(중진공)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용자서류 제출
- **(기업평가)** 전담기관(중진공)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*(기업진단 포함) 수행
 - *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 산정
- **(용자결정)** 기업심사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여부 결정
- **(대출실행)** 중진공 직접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
 - * **(중진공)** 직접대출, 성장공유형(전환권), **(취급은행)** 대리대출, 이차보전
- **(사후관리)** 부정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 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 실시
 - *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,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
 - **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은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**제출서류 간소화(미정) :** 기업심사(기술성 평가) 시 제출서류의 종류를 29개에서 약 15개 정도로 간소화 예정 * (기존) 29종 제출 → (우대) 15종 간소화

사업4

창업중심대학 [창업성장 / 창업사업화지원사업]

- (사업목적) 우수한 창업 아이템,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혁신성장 동력 창출
* 인천 지역특화 분야 : ①물류로봇 ②자율주행로봇 ③모빌리티 소부장

- (지원규모) '24년 0.72억원 / '25년 0.72억원 / '26년 0.72억원
※지원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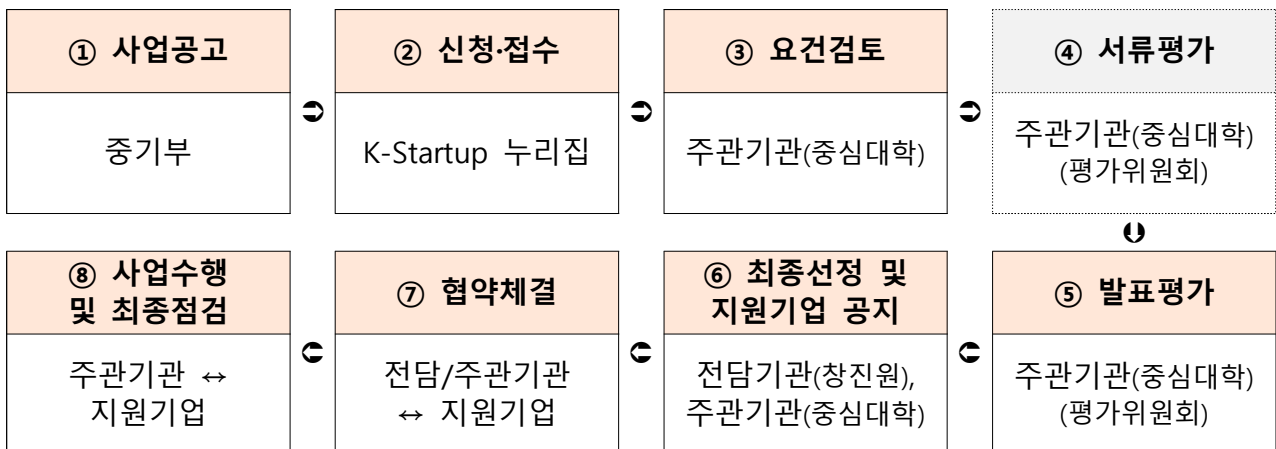
- (지원대상) 창업 개시 후 3년 이내 창업기업(초기 창업기업만 지원가능)
*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

- (지원내용)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자금 및 지원기업(창업기업) 역량강화 프로그램* 등 지원
*창업교육, 멘토링, 마케팅, 투자유치, 실증지원, 기관·기업 연계 등(대학별 상이)

<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

내역명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초기 창업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 2)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10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(기업) • (지원내용) 창업사업화 자금(기업당 0.7억원 내외), 창업중심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

- (추진절차)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(기존절차)



- (신청접수) 창진원 K-Startup 누리집(www.k-startup.go.kr)
- (요건검토)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
-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(가점포함)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(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)
- (발표평가) 초기·도약기 창업기업별 평가 항목*에 따른 대면평가(필요시 온라인평가)를 통해 신청기업을 종합평가
 - * (평가항목)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신청기업의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(최종선정) 전담기관(창진원)·주관기관(창업중심대학)이 ‘평가위원회’ 결과에 따른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, 정부지원금 배정*하여 공고**
 - * (차등배정) 평가 고득점자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차등 배정
 - ** (선정공지) 창진원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지원기업(창업기업) 최종 선정 공고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참여기업이 신청 시 ‘④서류평가’ 단계 면제

사업5

스마트공장 (제조혁신 /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)

- (사업목적) 제조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스마트화 기반 강화,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 도모
* 인천 지역특화 분야 : ①물류로봇 ②자율주행로봇 ③모빌리티 소부장
- (지원규모) '24년 14억원 / '25년 14억원 / '26년 14억원
※지원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(지원대상)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
*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
- (지원내용)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하여 첨단기술 적용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,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
* 내역별 세부 지원내용 상이
- 스마트공장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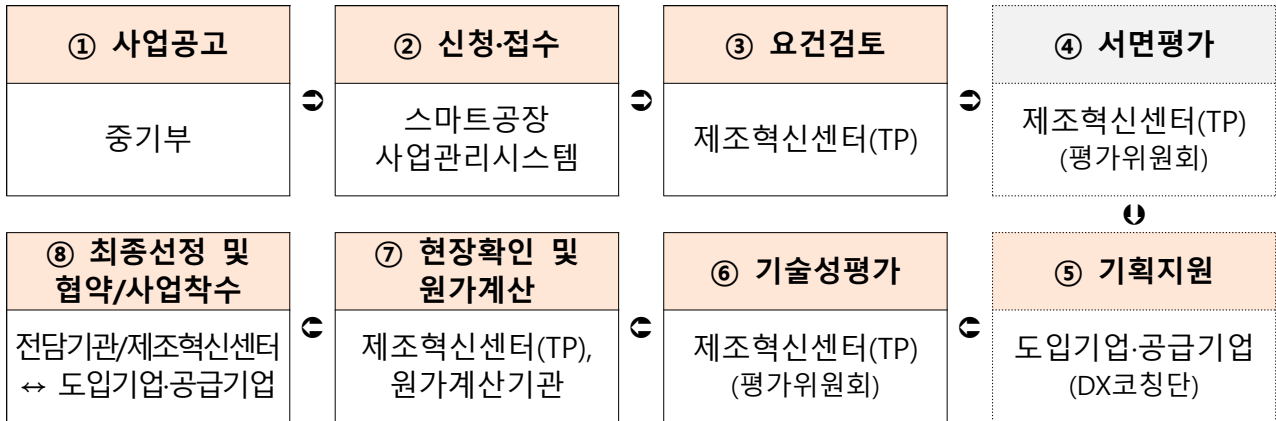
<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

내역명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	비고
고도화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인 제조 중소·중견기업 * 중간1 :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• (지원규모) 최대 2억원 이내, (사업기간) 9개월 	정부지원금 비중 50% 내 (민간부담금 50% 이상)
고도화1 (동일수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신청자격)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제조 중소·중견기업(1회 한함) * 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 • (지원규모) 최대 0.5억원 이내, (사업기간) 6개월 	

* (중간1)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·분석, (중간2)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

□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, 제조혁신센터(테크노파크)

□ (추진절차)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(기존절차)



- (신청·접수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
- (서면평가) 사업계획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등을 서면 평가하여 최종 선정규모의 1.5배수 선발
- (기획지원) 서면평가 선발과제 대상 사업계획 수립 지원(선택사항)
- (기술성평가) 사업계획서 기반 대면평가(발표평가)를 통해 고도화 지원 적합성 평가
- (현장확인)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여부 등 예산, 목표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확인을 통한 적/부 판정*
 - * (적/부 판정)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또는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되며, 기획지원을 선택한 도입기업의 경우 기획지원 시 현장확인 병행 실시
- (최종선정) 평가결과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최종 선정·후보·탈락 대상기업 승인(중기부)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지역별 상황에 따라 '④서면평가' 단계 면제 가능

① [사업1] 중소기업 혁신바우처(컨설팅)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신청자격 요건 완화 : 참여기업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면 가능
 - * (기존) 제조업 영위 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)
 - (우대)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)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참여기업이 신청 시 '④진단·평가' 단계의 현장평가 면제

② [사업2] 수출바우처(수출지원/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)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중 수출바우처 신청기업 간 제한경쟁
- *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트랙(내수/초보/유망/성장/강소)을 선택하여 신청하고, 평가를 통해 할당예산(100억원) 한도 내 지원기업 선정

③ [사업3] 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 (정책자금)

- ☞ 제출서류 간소화(미정) : 기업심사(기술성 평가) 시 제출서류의 종류를 29개에서 약 15개 정도로 간소화 예정
- * (기존) 29종 제출 → (우대) 15종 간소화

④ [사업4] 창업중심대학(창업성장/창업사업화지원사업)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참여기업이 신청 시 '④서류평가' 단계 면제

⑤ [사업5] 스마트공장(제조혁신/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)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지역별 상황에 따라 '④서면평가' 단계 면제 가능